

#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일반 가점제)

## ■ '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'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

- 장소 :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견본주택

- 대상자 : 일정 안내 참조

- 제출 기간 : 별도 안내

※ 서류 접수 진행은 별도 안내자만 접수 가능합니다.

구분	제출 서류	내용
필수서류	주민등록표등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요망
	가족관계증명서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발급분에 한함.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'아파트 계약용'으로 직접 기재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,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
	신분증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	출입국사실증명서	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: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31) (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)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)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"상세"로 발급 요망)
	주민등록표초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(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) -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(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)
	혼인관계증명서	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,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 경우 :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기간 지정 발급 ※발급기간 :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31)
	복무확인서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제 3자 대리인 계약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)	위임장	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및 인감도장	용도 : 아파트 위임용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신분증 및 인장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
※ 인감도장은 정당계약 시 필히 지참 바랍니다.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외)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31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

※ 모든 서류는 세대원 전부 포함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발급